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68

발의연월일: 2024. 7. 15.

발 의 자:김상훈·김선교·최수진

송언석 · 이준석 · 임종득

박수영 · 김소희 · 정희용

이달희 · 김석기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내 벤처・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(Corporate Venture Capital, CVC)을 제한적으로 설립・운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. 특히 현행법은 CVC(벤처투자회사・신기술사업금융회사)가 투자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외부 출자 한도를 출자금 총액의 40% 이내로 제한하고, CVC의 해외투자는 총 자산의 20% 이내로 규제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, 3고(고금리·고물가·고환율)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투자가 위축되어 벤처·스타트업생태계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됨. 이와 관련하여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CVC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CVC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40%에서 50%로, 해외투자 제한의

경우 20%에서 30%로 완화함으로써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0조 제3항제4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). 법률 제 호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0조제3항제4호가목 중 "100분의 40"을 "100분의 50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라목 중 "100분의 20"을 "100분의 30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	제20조(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
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)	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)
① · ② (생 략)	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	③
가 주식을 소유한 벤처투자회	
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	
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	
니 된다. 다만, 제2항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	
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	
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	4
해당하는 투자조합(「벤처투	
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	
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	
및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	
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	
업투자조합을 말한다. 이하	
이 조에서 같다)을 설립하는	
행위	_
가.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	가

소속 회사가 아닌 자가 출 자금 총액의 <u>100분의 40</u>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 자한 투자조합

나. · 다. (생략)

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(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)를 하는 행위 (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한투자를 포함한다)

가. ~ 다. (생 략)

- 라. 총자산(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한다)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
- 6. (생략)
- ④・⑤ (생략)

	<u>100분의 50</u>
	 나.·다. (현행과 같음)
J. - -	
-	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	라
	(현행과 같음) ·⑤ (현행과 같음)